
2021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1.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21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21. 9. 30.(목) 16:00 ~ 17:30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000, 000, 000, 000, 000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 (2021-55) : 화재현장 현장대응 운영일지
 - (2021-56) : 119 신고 녹취록 및 무전 녹취자료
 - (2021-57) : 감사위원회 조사 경위 관련 문서 일체 및 외부전문가 의견서
- ◆ 심의결과
 - (2021-55)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2021-56) : 기각 - 비공개
 - (2021-57) : 기각 - 비공개

【 개 회 】

〈000 위원장〉

○ 안녕하세요?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000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이의신청 3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각 안건의 간사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질의응답,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1-55 이의신청 】

안건명 : 화재현장 현장대응 운영일지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55호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 강북소방서 00팀장 000입니다.

〈000 위원〉

-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비공개 사유로 3가지를 들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두 번째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작전상 보안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제6호에 다수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각각 실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정보에서 어느 부분이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라고 하셨는데 제3조제1항을 보면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안에 운영일지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000 팀장〉

- 통신보안에 소방에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일지 상 기록된 내용이 소방에서 지휘관과 대원 현장활동, 요 구조자, 무선통신상 소방음어 약호자재 라고 합니다. 약호자재를 사용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의무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비공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사실확인자료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통신의 감청?

〈000 팀장〉

-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00 위원〉

- 이것은 결국에는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은 운영일지잖아요. 보통 통신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와 관련해서 가입한 사실 또는 문자 수발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법에서의 타인과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운영일지여서 일단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팀장님 의견은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작전상 보안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셨는데 운영일지에 어느 부분이 특히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000 팀장〉

- 현재 무전 상의 내용이 지휘관과 대원 기타 유관기관까지의 전반적인 지휘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대원들의 위치 그 다음에 현장활동의 작전 또는 전략을 세우고 대원들의 활동 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될 시에는 상당히 소방업무에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상당히 심하므로 비공개로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이게 보안이 왜 필요할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000 팀장〉

-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대원과 직원 간의 유관기관 등 전반적인 현재 활동사항에 무전내용에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휘관이 어느 층에 어느 장소에 어디로 작전을 전개하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보내주셨던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공개를 요청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관련해서 어려움에 있으셨던 것 같고 의원실을 통해서 운영일지의 내용이 상당부분 공개가 언론을 통해서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기사는 보셨나요?

〈000 팀장〉

- 아닙니다. 운영일지가 국회의원에 대한 제공된 자료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000 위원〉

- 제가 본 것이 다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000 팀장>

- 또한 신청자가 당시 화재현장과 연관성이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관계자 기타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아파트 가족들하고 확인된 사항이고 또한 위임장 등 특이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000 위원>

- 관련성 없는 제3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팀장>

- 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000 팀장>

- 인명구조 20명, 이재민 40여명에 대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상층부 요구조자의 인적사항, 호실, 인명구조한 장소, 일부 개인정보는 구출한 요구조자의 정보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동·호실, 이송병원, 화상 및 부상정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000 팀장>

○ 끝단부에 000이라고. 현재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000 위원〉

○ 그렇지요?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다만 몇 동 몇 호의 몇 명이 구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나 그 밖의 어떤 정보들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위치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000 위원〉

○ 제가 찾아봤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서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000 팀장〉

○ 참고로 서울시 비공개 세부기준 29페이지 서울소방본부재난대응단에 대한 비공개 사유에 화재사건보고서, 감식자료, 화재조사보고서, 관계자 진술, 화재현장 영상파일, 화재진압 무전내용들이 비공개 대상으로 일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방금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000 팀장〉

○ 서울시 비공개세부기준이라고 해서 그 항목에, 저희들이 이런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도 무전내용이 기록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다 처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그 말씀하신 기준을 바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공유해서 같이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되는지 시도를 해볼게요. 지금 공유해 드리는 사진이 보이시나요?

〈000 팀장〉

- 네, 보입니다.

〈000 위원〉

- 이 기사가 현재 문제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원실에서 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이거든요. 현장대응 운영일지를 보면 언제 무선을 전파했는데 구조를 시작했고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들, 몇 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일지를 세세하게 보고 상당한 내용들을 해서 구조가 혹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기사로 저는 봤거든요.

〈000 팀장〉

- 이 기사내용은 일부 보고를 받았습시다. 현재 기사를 쓰신 분의 의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요구조자를 발견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있고 그 상층부에 있는 22명의 요구조자와 42명의 이재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평소에 소방서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언론 기사라는 것이 때로는 어디 한군데 포커스를 맞추고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소방서에서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운영일지의 상당 부분이 주장하고 싶은 쪽으로만 유리하게 제시가 됐다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해주시는 것이 이런 정보를 일부만 보는 대중들 입장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000 팀장〉

- 언론 및 매스컴에 대한 정보의 누락, 잘못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대민협력팀에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이 포커스를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인명구조한 사항은 표시 않고 십분 정도 지연된 사실만, 구조지연이 늦었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아쉬움이 남은 상태고 그래도 저희들이 새로운 활동이나 했던 현장활동 위주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000 위원〉

-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관계자 진술, 무전내용 같은 것들이 서울시 비공개세부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십여년전부터 계속 비공개 처리가 됐던 건가요?

〈000 팀장〉

- 제가 보고 받기로는 최근에 저희 서울본부 산하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00소방서

에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궁금해서 운영일지하고 무전통신록을 달라고 공개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와서 비공개처리 되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 와서 참고로.

〈000 위원〉

-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 좋게 생각하면 적절하게 출동했고, 진압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면 오셔서 열람하는 것까지는 가능한건가요?

〈000 팀장〉

- 현재 아파트 관계자 유가족분이 운영일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비공개 사유가 되어서 공개하지 못하고 방문하여 열람토록 해드린다고 하니 유가족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 팀장〉

-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열람을 하더라도 동호수, 인명구조, 작전, 소방의 무 기타 등등은 음영처리를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단 운영일지를 보면 이것은 일단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앞서 팀장님께서 이 화재사고와는 무관한 제3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정보공개제도 취지 자체가 이해관계인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다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적격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현장대응단 운영일지를 보면 화재현장의 시급한 상황에서 분단위로 정말 소방대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화재진압 작전이면 작전이지만 통상적으로 작전이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할 때는 그 작전이 노출돼서 뭔가 불이익이나 작전실패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화재진압 작전은 작전이지만 대응일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화재진압이 뭔가 실패가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000 팀장〉

○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휘관의 대원의 지휘체계 명령이라든지 작전을 전개하는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요구조자의 층별 호수가 다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소방음어나 약호자재가 기록되어 있어서 비공개해야 한다고 지휘관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인과 본 사건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법 제5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이런 관계자 아니라는 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000 위원〉

- 그리고 통상적으로 현장대응단 운영일지는 화재사고가 종료되고 나서 얼마쯤 뒤에 작성이 됩니까?

〈000 팀장〉

- 대략적으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작성하는 것은 7일 이내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무전으로 전파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기로 그것을 옮기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무전이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2대를 다 번역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 속에 오류가 없도록 1차, 2차, 3차까지 검수를 하기 때문에 7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잘 알겠습니다.

〈000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소방음어는 보안사항이지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운영일지에는 다수의 소방음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이게 공개되었을 때 소방음어를 재구성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그게 유출이 되면 소방음어를 바꾸거나 해야 하잖아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음어는 본부방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음어를 바꾸고 있는데 세부적인 음어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각서의 명칭, 약호자재는 일부 바꾸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에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소방음어 일부를 발취해서 농담을 하는 경우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일부가 공개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여기 운영일지에는 음어는 없지 않나요? 팀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작전상황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유한 현장대응단 운영일지에는 음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000 팀장〉

- 몇 가지가 있습니다.

〈000 위원〉

- 저도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작전 관련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방화 범들에 의한 우려 때문에 금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000 팀장〉

-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을 굳이 적용하는 이유가 내부적인, 구체적인 현장에

서 대응체계를 갖다가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나올 우려가 판단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방화범들 중에서 유사한 형태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예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필요한가요? 이미 거의 다 대부분 알려진 것 아닌가요?

<000 팀장>

○ 현대 사회가 다변화되고 성인들의 범죄보다는 청소년, 젊은층에서의 사고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예전에 번호키 따는 법,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등이 공개되어서 힘든 사항도 있었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나가주시고요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3가지 비공개 사유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공개 정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그 다음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이 부분이 제한되는데 저는 지금 운영 일지는 주고받은 무선의 내용을 정리해서 업무문서로 정리를 해둔 것이죠.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전상 보안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셨는데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출동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서 인명구조를 하고 어떻게 했고 병원까지 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이게 뭔가 어떤 용어에서도 꼭 절대적으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기관에서 적절히 소명을 해주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필요성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특히 보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특히나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의원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사안이 운영일지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요. 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부실구조 논란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반박을 하시고 이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알 권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아까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고 몇 동 몇 호에 어머니, 아이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개인이 특정돼서 이게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공개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는 서울시 쪽에서 만든 비공개 세부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요청 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이라든지 화재가 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

비공개청구를 안하고 아마 직접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청구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한 상태라서 이분한테는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의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음영처리를 해서 공개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소방작전이라고 하면 작전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을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경찰이라든지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운영일지가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소방쪽이라든지 경찰쪽에서 과연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다 공개가 됐을 때 단순하게 한 두 사람한테 공개돼서 그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보게 되면 소방과 경찰 쪽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비공개 쪽에 생각이 많았는데 000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공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000 위원〉

- 참고로 제가 지금 서울시 비공개 세부기준 받아서 다시 보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소방 관련된 것은 우리 사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거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팀장님이 우리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앞서 담당 팀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정보 비공개 선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례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저도 운영일지를 보면 그렇게 비공개를 꼭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지금 비공개 사유를 이야기하자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화모방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제작된 무수히 많은 화재 영화를 통해서 진압 관련된 매뉴얼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어가 사용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확인해주셨듯이 운영일지를 거의 3차례 걸쳐서 수정을 하면서 최종 작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작성단계에서 음어는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실제로 화재와 관련된 아파트 동호수 같은 것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하되 현재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 동호수 정도만 삭제하고 공개해도 화재진압 작전의 실패라든가 모방범죄라든가 비공개 사유로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심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해서 운영일지에서 동호수만 익명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저는 이 사건 처음 보면서 이런 것까지 계속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요청을 받아서 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업무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소방음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이 노출되었을 때 소방작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현장대응 운영일지 사항 내용을 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동호수라든지 개인정보일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전체로 그런 것을 마스킹해서 공개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저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호수 뿐만 아니라 몇 호의 현관문 비번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당연히 다 주의 깊게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해서 공개해야 될 것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보수

적으로 봐서 현장대응 운영일지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공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 저는 작전 음어가 공개됐을 경우에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면 작전 음어를 블록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관문 비번은 바꾸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비번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비번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회사 비번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는 당연히 다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부분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는 비공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될 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공개를 하라고 하면 그 과정을 다 공개를 하라고 하면 이게 과연 시정이나 국정이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0 위원님처럼 비공개로 하고 청구인한테 열람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 저도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소방운영일지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례가 되게 되면.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 사람이 이것을 신청했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도 있지만 그곳에 누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청주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집은 그 곳일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밤 우리집에서 몇 명이 구조됐다고 하는데 그 몇 명이 원래 1명이어야 하는데 3명이라든지 2명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개인정보의 영역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분공개를 하되 열람

의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000 위원>

○ 저는 찬성입니다.

<000 위원>

○ 저도 찬성합니다.

<000 위원>

○ 저도 찬성합니다. 단순 열람인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현관문 비번은 소방대원한테 알려줬으면 당연히 바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연결된 그런 위험을 고려했을 때 비번은 가리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수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호수를 가려버리는 것이 몇 층을 구조했는지를 약간 흐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저는 공개를 해도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보공개법이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방식도 원칙대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000 위원>

○ 지금 6호 사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은 모두 삭제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것 맞나요? 아니면 삭제하는 의무까지 포함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000 위원>

○ 다수 의견은 부분공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부분공개 의견에서도 현장 대응일

지 부분에서 동호수와 기타 신상부분이 나오는 것은 다 익명처리하고서 열람으로 부분공개인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렇게 다수가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합의한 내용은 6호사유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음영처리하고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관부서 재입장)

〈000 위원〉

-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결정사안은 6호 사안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55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1- 56 이의신청 】

청구내용 : 119 신고녹취록 및 무전녹취자료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56호 종합상황실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소방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장 000이라고 합니다.

〈000 위원〉

- 반갑습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이 사건 관련해서 신고자, 청구인이 잘못된 신고내용으로 인해서 자신이 현행 범으로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000 소방장〉

- 네. 그런데 잘못된 신고라고 함은 119에 신고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112에다가 신고한 내용이 잘못돼서 112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현행범 체포하고 인신구속을 하고 이런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119신고녹취와 119에서 출동했을 때 무전녹취 파일 내용을 요청을 한 건입니다.

〈000 위원〉

까지 공개를 요청한 건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119에 신고한 [REDACTED]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2에 신고한 내용이나 119에 신고한 내용 자체는 동일한 것 아닌가요?

〈000 소방장〉

- 신고한 내용 자체는 동일한 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119에다가 신고를 한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때 119에 신고를 한 건입니다.

〈000 위원〉

- 119에 신고한 내용에도 칼 관련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112에도 나오고.

〈000 소방장〉

- 그러니까 112에 신고한 주체는 [REDACTED]
[REDACTED]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내용들을 아마 [REDACTED]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동지령을 내릴 때 자체도 [REDACTED]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000 위원〉

- [REDACTED] 정보는 저희한테 공유해주신 내용에는 없나요?

<000 소방장>

- 네, 그 내용에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출동지령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청구인이 진짜 자신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지령문인가 그게 필요하지 지금 사실 무전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은 음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개가 어려운 것 같고 신고녹취록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REDACTED] 신고를 했기 때문에 112에 000 신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신고녹취록이 공개가 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0 소방장>

-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12에다가 항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도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그러기 때문에 구급활동일지에 특이사항 없다는 내용을 받기 위해서 구급활동일지까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구급활동일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고요. 구급활동일지에도 신고자가 [REDACTED]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공개를 했고 119 신고녹취록 같은 경우는 비공개를 한 이유가 일단 [REDACTED]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원래 이것은 신고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정보 공개법의 취지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 싶어서 최초 신고자에게 통화도 했습니다. 혹시나 녹취록의 형태로 나가게 됐을 경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음성이라는 것으로 나가 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식별정보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서 녹취록의 형태로 공개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것을 공개 를 반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비공개처리 했습니다.

<000 위원>

- 청구인은 000 119에 신고한 것을 알지 않을까요?

<000 소방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자들도 추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경찰들 이 출동을 했을 때 [REDACTED]
[REDACTED]
[REDACTED]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0 위원>

-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구급활동일지 관련해서는 부분공개를 하셨던 부분 이고 그 부분공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인신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음 영처리하고 공개를 했는데 청구인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공개를 해달라고 얘기 를 하는 것이지요?

<000 소방장>

- 네.

<000 위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소관 사항 아닌가요?

<000 소방장>

- 이런 경우에도 혹시나 진행과정 중에 칼을 휘둘러서 누가 찔릴 수도 있는 것이고 추후적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구급차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을 개방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펌프차, 구조대까지 같이 출동을 보내고 나서 경찰에다가 이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 동시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동대응도 요청을 했지만 사후에 알게 된 것은 0000 112에다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도 알게 됐습니다.

<000 위원>

- 소방방재센터 쪽에서 출동을 하면서 현장체포를 하신 거예요?

<000 소방장>

- 저희가 현장체포를 한 것은 아니고 112가 경찰에서 현장체포를 한 것이지요.

<000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이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한 것이잖아요?

<000 소방장>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이 사건이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항고하고 있는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소송진행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 있나요?

〈000 소방장〉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개인정보유출, 왜냐하면 청구인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핵심내용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관련해서 [REDACTED] 이 내용을 잘못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000 소방장〉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것 없고요?

〈000 소방장〉

- 네

〈000 위원〉

-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똑같은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료를 경찰에서 소방서에다가 요청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000 소방장〉

-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협조 공문을 저희가 받고 공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119종합상황실 표준운영규정에 보면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다시 돌려 말하면 소방업무라든지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000 위원〉

- 그 근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는 이 자료를 보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소방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추가 질문사항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잠시 대기하셨다가 의결 내용 선포시 다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3건인 것 같은데요. 구급활동일지는 부분공개한 부분이고 부분공개한 내용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다 음영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비공개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전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은 보면 음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

어서 이 부분도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녹취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비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와 관련된 내용만 공개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화녹취록이라고 하는 것도 소방본부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 했을때도 청구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비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000 위원〉

- 저도 전체적으로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앞서 소방 관련 녹취록에서도 확인했지만 현장일지는 무전이 오고 간 곳과 그 해당 상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는 문서지만 녹취록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소방이나 범죄관련 동영상이라든가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당 부서에서 부분공개한 내용 그 이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도 다른 두 분 위원님과 의견은 같고요. 또 하나 첨언하자면 청구인 자신이 가정법원 재판 증거자료로 쓰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요청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4호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경우에는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재판이 진행중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청구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에 기초해 볼 때는 4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기타사유로 봤을 때 무전녹취자료나 119신고녹취록은 개인신상정보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에 보안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과 똑같이 비공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저도 앞에 업무일지랑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결론은 앞에 위원님들하고 동일합니다. 특히 [REDACTED] 비공개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REDACTED] 위해서 비공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관부서 재입장)

〈000 위원〉

- 참고로 아까 000 위원님께서 재판 관련된 부분은 현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서는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000 위원〉

- 비공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호, 3호, 6호만 포함되어 있으니깐요.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56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1-57 이의신청 】

청구내용 : 감사위원회 조사 경위 관련 문서 일체 및 외부전문가 의견서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57호 조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 조사담당관 000입니다.

〈000 위원〉

- 지금 감사를 실시하게 된 증거가 이 감사요청 추가자료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이 내용을 청구인이 열람을 하셨나요?

〈000 주무관〉

-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000 위원〉

- 조사하실 때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000 주무관〉

○ 문답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000 위원〉

○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왜 감사하게 되는지 내용을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공개하지 않나요?

〈000 주무관〉

○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인 큰 타이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고 문답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본인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지요.

〈000 위원〉

○ 이 분은 아직 조사를 받고 계신 중인가?

〈000 주무관〉

○ 네. 재심위가 어저께 끝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000 위원〉

○ 이분이 청구하신 것이 총 4가지인데 응답서 빼고 나머지 3가지의 경우는 요구하시는 이유는 소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본인이 아시는 내용인데 굳이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어차피 외부전문가 의견서는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이분이 요구했던 조

사 경위라든가 포함된 문서들은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혐의자인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감사요청 추가자료라고 하는 유사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외부전문가의 의견은 구체적인 신상도 들어 있고 의견도 들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자체가 2차 가해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청구내역 중에서 1번, 2번, 4번이 비공개라고 되어 있고 4번은 외부전문가 의견서로 저희한테 파일을 비공개 심의대상으로 보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감사요청 추가자료 한글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1번, 2번 중에서 2번에 해당하는 걸까요?

〈000 주무관〉

- 1번하고 2번에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비공개대상은 3개지만 결국에는 비공개대상으로, 그러니까 청구 들어온 것 3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문건이 2개이신 거예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청구인에게 조사 관련 문답서는 공개를 하신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문답서는 공개를 했고 청구인은 나머지 과정에서 소위 전문가 의견서라든가
등등 기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000 위원〉

○ 형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거나 그런 상태인건가요?

〈000 주무관〉

○ 형사적으로 고소한 건은 아닙니다.

〈000 위원〉

○ 고소 같은 것은 진행되지 않고 내부 감사요청만 한 상태인건가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범무법인 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조사문답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범무법인 00이 조사문답을 했다는 건가요?

〈000 주무관〉

○ 그렇지 않습니다. 범무법인 00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상태로 문답은 청구인이 직접 저하고 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그분을 대리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고 이해를 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추가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잠시 대기를 하셨다가 의결 내용 선포 시 다
시 참석바랍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저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2개 서류인데 하나가 외부전문가 의견서이고 두 번째
가 감사요청에 관한 요청서인데 둘 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또 구체적인

다른 사항과 다르게 성추행과 관련된 사항이라 외부전문가 의견도 비공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비공개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전문가 의견 관련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 관련 요청사항 이 건도 어차피 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우리가 일전에 다뤘던 사건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관련 사안 관련해서 외부로 펴의 자문의견서를 받았고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마 비공개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영업비밀 같은 것으로.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 의견서도 우리가 그전에 비공개로 결정했던 로펌의 자문의견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봐서 비공개가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사안이 담당조사관과 당사자 사이에 문답이 오고 간 해당 부분은 공개를 했고요. 이후에 서울시에서 징계결정이 있게 되면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분이 다투어질 것이지 현재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현재 그 과정에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법 상에 현재 감사 중인 사항에 관련되었다고 봐서 위원님 의견처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도 감사절차가 종료가 돼서 이미 끝나서 다른 절차로 이행하거나 그런 단계였다고 하면 감사요청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개인정보 나오는 부분은 비공개로 해서요. 아까 담당 주무관님 말씀이 사실상 조사는 완료됐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비공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조서문답서는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청구한 서류들은 전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지금 감사요청 사항과 전문가 의견서 2가지잖아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준해서 봐서 그 기간 동안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공개를 특히 감사요청사항은 공개를 하는 것이 공개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전문가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향후에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참고해서 단체와 이름을 삭제하고 내용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내부검토가 끝난 후에 공개하되 외부전문가 의견서는 개인이 특정되는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내부검토가 끝난지 여부는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검토가 끝나고 나서 공개토록 한다 이렇게 미리 그 부분을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내부검토 중인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경우에는 내부검토과정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고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법의 취지가 내부검토가 끝나고 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안내를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해요. 자동으로 조건부로 공개하고 이런 것

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공개를 할 때도 저는 성명을 삭제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 정도의 사족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정리하면 지금은 비공개 의견이신건가요?

〈000 위원〉

- 지금은 내부검토 중을 이유로 비공개 의견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소관부서 주무관님 재입장 해주세요.

(소관부서 재입장)

〈000 위원〉

-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5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000 위원님이 추가로 내신 의견은 의견으로 같이 달아서 소관부서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